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54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김승원 · 서미화 · 이광희
김남희 · 박상혁 · 허영
박수현 · 이원택 · 이성운
권칠승 · 박균택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다음”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을 “해당하는 사전 실태점검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각 호에”로 한다.

1.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2.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 점검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 또는 서류 등의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중 “제64조에”를 “제63조의2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제64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다음-----해당하는 사전 실태점검을 할----- ---
<신 설>	1.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신 설>	2.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 점검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② -----제1항 각 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설>

에-----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이행강제금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 또는 서류 등의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u>제64조에</u>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の内容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u>부과할 수 있다.</u> ② <u>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④ <u>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 ----- -제63조의2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제64조에-----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